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Contents

개 요 I

- 의 의
- 관련근거
- 수행기관
- 해외인증사례

인증 신청 II

- 인증대상
- 인증신청자격 및 시기
- 인증절차
- 인증등급·유효기간·인증마크

인증실적 III

- 예비 및 본인증실적
- 신청기관별 인증실적
- 지자체별 인증실적

인증제 활성화 방안 IV

- 인증제활성화 방안
- 홈페이지소개

I. 개요

의 의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 · 이용 ·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이하 BF인증제) 법제화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서 7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법제화
2015년 1월28일 개정/2015년 7월29일 시행

- 주요내용

제10조의2에 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BF인증제 법제화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협조관련 공문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법제화 및 인증 의무 대상시설의 예비인증 참여 알림

1. 귀 사도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에 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제")을 2015년 7월29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3. 편의증진법의 인증제 대상 범위로는 편의증진법 제7조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0조의2제1항에 의해 인증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중 동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이에 시행예정인 인증의무제는 대상시설의 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시점에 부여하는 본인증으로 한하게 되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재시공으로 인한 인증시설물 소유자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설계 및 계획단계부터 받을 수 있는 예비인증 참여를 적극 권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인증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세종특별자치시청, 부산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대전광역시청,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청

주무관 장애인증인지 2015. 7. 7. 김수

합조자 김중열 원파갑 강민철

시청 장애인증인지 4854 (2015. 7. 7.) 김수

우 039-012 세종특별자치시 드림4로 19 (어진동) 보건복지부 8층 605 / http://www.mw.go.kr
호 장애인증국무 장애인증인지청과

전화번호 044-202-3304 팩스번호 044-202-3961 / neoscape1@korea.kr / 여국민 공개

위협할 만 119, 화재출력 129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법제화에 따른 협조 안내

1. 귀 기관(부처청)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에 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제")을 2015년 7월29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3.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개요 및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그리고 건축물이 의무인증대상으로 적용되는 시기에 대한 내용을 <붙임>으로 첨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5.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의 경우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함을 말씀드리오니 이를 관할 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증	예비인증
실제 건축물 등이 건설되어 인증을 받을 대상이 현존하는 경우, 대상시설물 중심으로 인증지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발급함	실제 건축물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건설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도면을 중심으로 인증지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예비인증서를 발급함

붙임 : BF인증제도 개요 및 적용기준 1부. 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이라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이라함

자료출처: 보건복지부제작 BF인증 홍보물 e-book

| 수 행 기 관

● 인증주무기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운영을 총괄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2년마다 주무기관 변경)

● 인증기관

-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심의
-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생산성본부

■ 해외인증사례 1(일본)

● 복지마을 만들기 제도 및 적합증

– 수행기관

1. 동경도청의 경우

: 복지보건국 생활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2. 사마타마현청의 경우

: 건강복지부 사회복지과 (도시정비부 건축지도과 협의)

– 관련법

1. 하트빌딩(Heart Building)법

– 건축물은 건축법과 하트빌딩법에 준하여 편의시설 설치

2. 배리어프리(Barrier-free)신법

– 하트빌딩법(건축물)과 교통무장애법 (건축물 이외 시설)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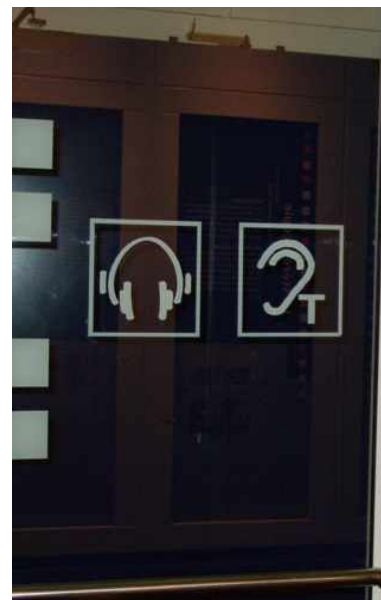
– 2000m² 이상, 신축건축물에 적용

3.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적합증 발급



■ 해외인증사례 2(프랑스)

- Tourism & Handicap 인증제도 : 주로 레저여행관련시설
 - 수행기관
 1. 인증라벨 발급
 - : 교통부 산하인 ATH(Association Tourisme & Handicaps)
 2. 인증수행 : 다각적인 단체 및 T&H위원회
 - 관련 법
 1. 장애인 기회균등과 독립에 관한 법
 - : 교통 및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이용가능 하도록 함
 2. TH인증제도 (Tourisme & Handicap)
 - : 장애인에게 레저여행 정보와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인증





e-business II. 인증 신청

인증 대상

인증 대상	
개별시설인증	도로
	공원
	여객 시설
	건축물
	교통 수단
지역 인증	

※ 한국장애인개발원

: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인증의 종류 및 신청시기

구분	예비인증	본인증
신청자	소유자 등	소유자 등
신청시기	본인증 전	공사완료 후
인증의무	권장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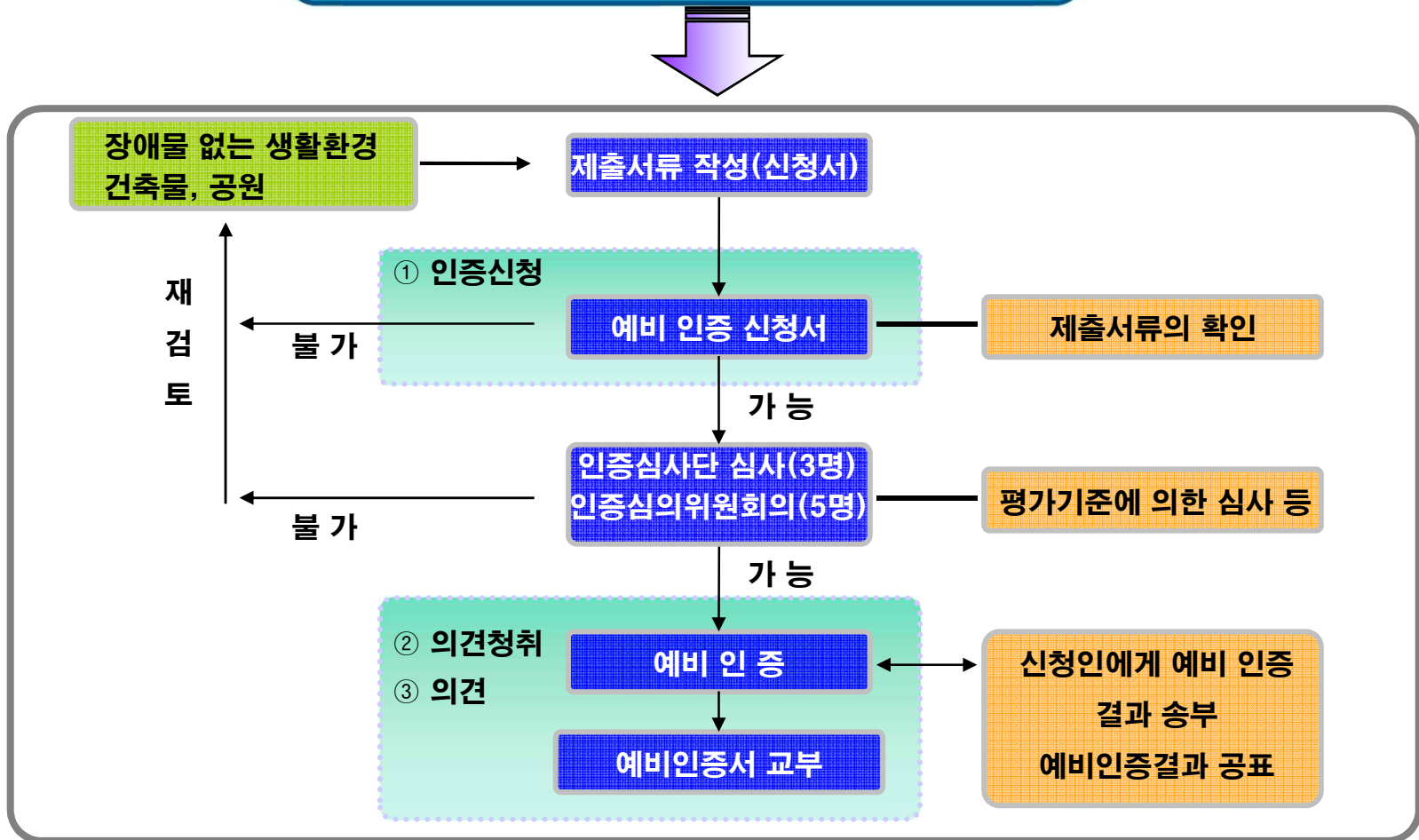
인증 수수료

구분	예비인증	본인증
개별시설인증	206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286)	403
지역 인증	10만㎡~200만㎡	618
	200만㎡~300만㎡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429)	807
	300만㎡ 이상	995

※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 소유자 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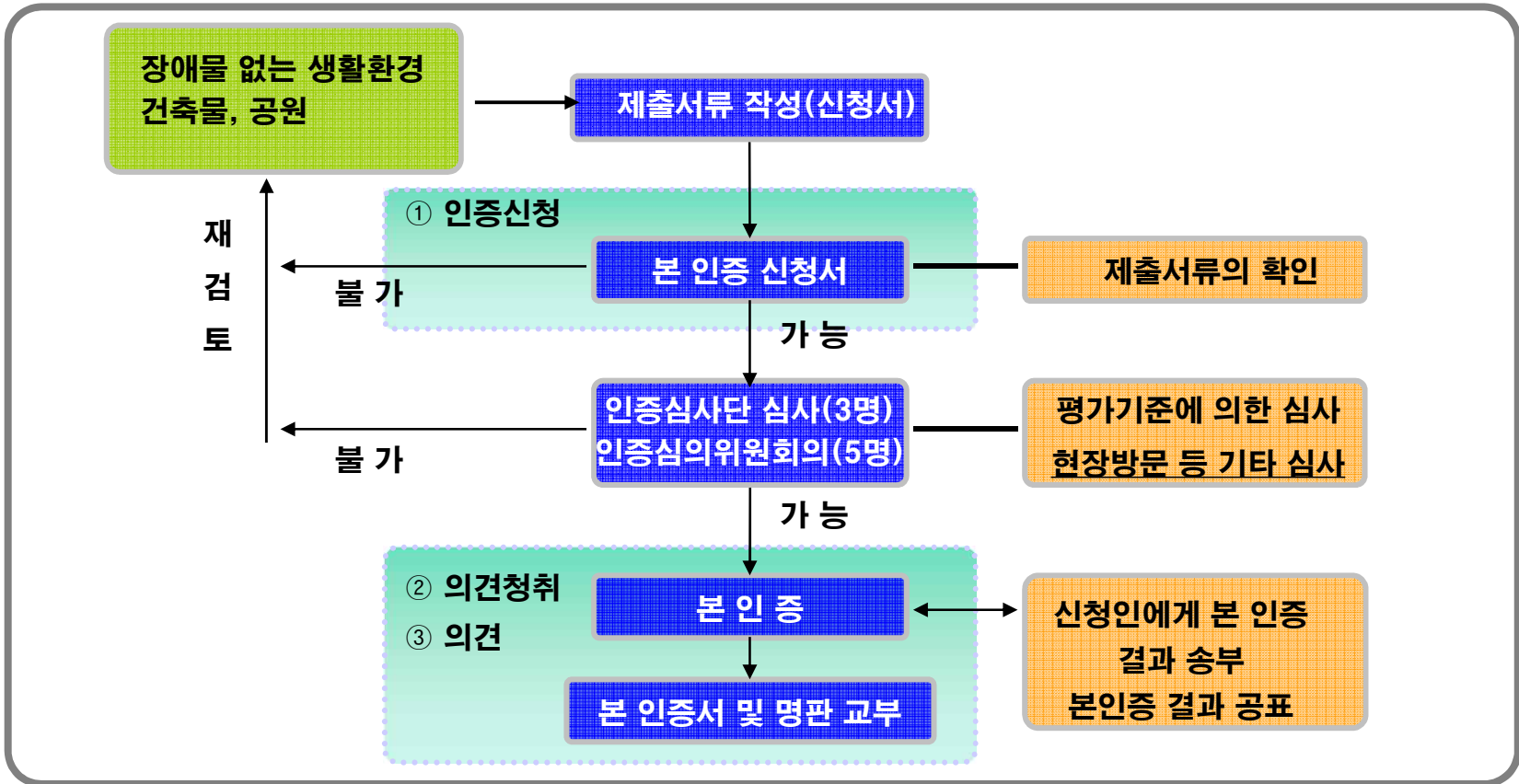
예비인증절차

● 사전협의(도면 등)



본인증절차

● 사전협의(도면 또는 현장상황관련)



인증 등급

1. 최우수(★★★) : 심사기준 만점의 90% 이상
2. 우수 (★★) : 심사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3. 일반 (★) : 심사기준 만점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해당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교통약자법 또는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않음

인증 유효기간

- 예비 인증 : 공사완료 후 1년 이내 본인증 신청
- 본인증 : 5년

※ 사후관리(연1회이상) , 인증연장신청(본인증만료 전 신청)

인증 마크



Orange

: 기쁨, 즐거움, 사교적인, 미래지향적



Green

: 건강, 안전, 자연, 평화, 신뢰, 정직

해외 인증마크



(일본: 적합증)



(프랑스)

III. 인증 실적

예비 및 본인증 실적(우리원, 2016년 12월 30일 기준)

연도별	구 분		
	예비인증	본인증	총 취득수
2008년	3	1	4
2009년	8	5	13
2010년	15	7	22
2011년	53	7	60
2012년	63	24	87
2013년	73	26	99
2014년	65	57	122
2015년	102	45	147
2016년	421	69	490
총 합	803	241	1044

인증기관별 실적 (2016년 12월 30일 기준)

인증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NH공사	장애인고용공단	총 계
인증실적	1044	260	72	1,376

지자체별 실적 (2016년 12월 30일 기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46	196	43	64	41	82	73	30	182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세종	총 합
37	161	201	50	10	68	36	56	1,376

IV. 인증제 활성화 방안

- **교 육**
: 인증제에 관한 인식개선 및 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지자체담당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생 등)
- **홍 보**
: 인증제의 추진의도와 효과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
- **인센티브 마련** : 용적율, 취득세 등

홈페이지 소개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이용(배너클릭)
: <http://www.koddi.or.kr/>
- BF인증 홈페이지 건축물 및 공원
: <http://bf.koddi.or.kr/>



감사합니다.

